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장순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순원 의원)

가.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9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등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치입법화하여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 기존에는 위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근거하여 접종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6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의자: 장순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감염 취약 계층의 구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 신설 (제9제5항 신설)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입법예고(2021. 10. 7. ~ 10.12.)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3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3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u> <u>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u> <u>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